

[ 불입1 ]

- ◆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- 정관변경 (안) 신/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후 (안)   | 개정이유  |
|--|---|---|
| <p><b>제9조 (주권의 종류)</b></p> <p>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</p>   | <p><b>제9조</b></p> <p>&lt; 삭 제 2019.09.16 &gt;</p>   | <p>전자증권법 시행에 의한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 (전자증권법 제25조제1항)</p>               |
| <p><b>제9조의2 (주식 등의 전자등록)</b></p> <p>회사는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</p>  | <p><b>제9조의2 (주식 등의 전자등록)</b></p> <p>회사는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 <b>다만,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b></p>         | <p>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.</p>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13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</b></p> <p>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</p>  | <p><b>제13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</b></p> <p>①~③ &lt; 삭 제 2019.09.16 &gt;</p>   | <p>전자증권법 시행에 의한 주식 등이 전자등록됨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</p> |
| <p><b>제31조 (이사 및 감사의 선임)</b></p> <p>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.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</p> | <p><b>제31조 (이사의 선임·해임)</b></p> <p>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·해임한다.</p> <p>②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| <p>조문 내용 및 번호 수정</p>  |

◆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
 - 정관변경 (안) 신/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후 (안)  | 개정이유   |
|--|--|--|
| <p>&lt; 신 설 &gt;</p> <p>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 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④ <u>이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 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  | <p>조문 번호 수정</p>  |
| <p>&lt; 제 31조 이사와 감사 분리 개정 및 신설 &gt;</p>   | <p><u>제31조의2 (감사의 선임·해임)</u></p> <p>① <u>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·해임한다.</u></p> <p>② <u>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제3항·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</p> | <p>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</p> <p>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 반영</p> |
| <p>제41조 (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</p> <p>① ( 현행과 같음 )</p> <p>② <u>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총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</u></p> | <p>제41조 (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</p> <p>① ( 현행과 같음 )</p> <p>② <u>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근속 1년에 대하여 월평균 급여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. 단, 근속년수가 1년 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수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.</u></p>  | <p>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 폐지 후 관련 내용 정관에 추가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부칙</p>  | <p>부칙</p>  |  |

◆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
 - 정관변경 (안) 신/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후 (안)  | 개정이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제3조 (시행일)<br>1.~17. ( 생 략 ) | 제3조 (시행일)<br>1.~17. (현행과 같음)<br><b>18.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변경·시행한다.</b> |      |